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5. 26 선고 2019가단22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진영, 장덕현, 정교순

피 고 1.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정인기

2. I

3. J

4. K

5. L

6. M

7. N

9. P

피고 2 내지 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식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H은 피고 I, J, K, L, M, N, O, P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8. 12. 24. 접수 제19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I, J, K, O, P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L은 3/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M, N은 각 2/4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1/7 지분의 비율로 1985.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부여군 Q 전 1,6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3. 5. 26. 망 R가 사정받았다. 한편 피고 I, J, K, L, M, N, O, P는 망 R의 상속인들이다(이하 위 피고들을 ‘R의 상속인인 피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 H은 2018. 5. 2. 망 R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5.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가단21008),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2018. 11. 2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 이후 피고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8. 12. 24. 접수 제19084호로 망 R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등기소 2018. 12. 24. 접수 제19085호로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종전판결에서 피고 H은 ‘피고 H의 조부는 피고 H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조부, 부친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언하여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R는 피고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라. 이후 R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20나118436), 항소심은 2021. 8. 12.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R를 피고로 하여 선고된 이 사건 종전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대하여 R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다.

마. 피고 H의 아버지이자 원고들의 조부인 S은 T와 혼인하여 자녀로 U, V, 피고 H을 두었는데, 망 W은 U의 배우자이었다. 원고들은 2012. 10. 2. 사망한 망 W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W이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던 중 2012년 초경 망 W이 원로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원고들의 숙모이자 피고 H의 배우자인 X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이후 망인이 2012. 10. 2.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망 W은 1965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 관리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가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H에 대하여 R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R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1985.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망 W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Y, Z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망 W이 196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망 W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그러나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이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4455 판결 등 참조).

증인 Y, Z의 각 증언,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W은 1956경 U과 혼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택에서 시아버지인 S, 시동생 V, 피고 H와 함께 거주하다가 약 9년이 지난 이후인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W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증여받는 등 특정한 권원을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망 W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만이 확인될 뿐이고 어떠한 경위로 경작을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망 W의 점유 개시 시점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망 W은 함께 거주하는 시아버지 망 S의 허락 또는 승낙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허락 또는 승낙을 얻어 토지를 경작을 시작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해당 토지를 점유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W은 약 196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40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사이에 시아버지 S이 1983. 10. 20.경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고, 건강의 악화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게 되어 직접적인 점유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거나 관리하도록 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는 망 W이 더 이상 경작하지 않자 수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시동생 부부인 피고 H, 소외 X 부부가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H은 이를 기화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판결을 거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망 W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별지